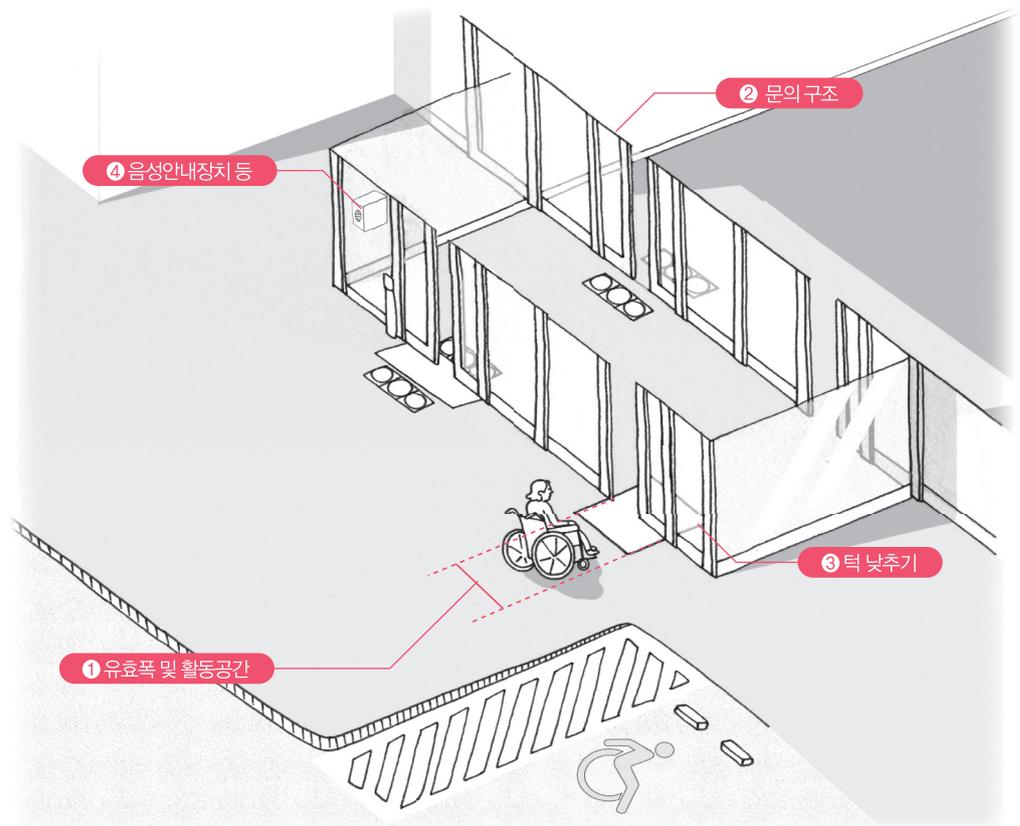


### 3.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



#### ■ 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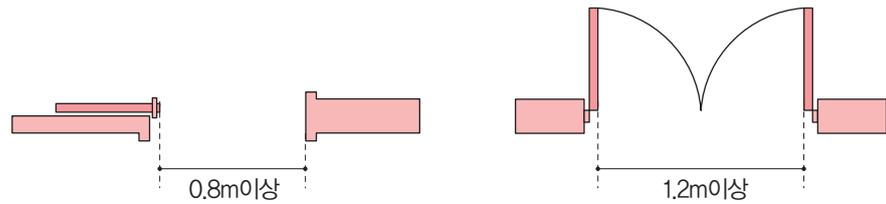
출입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닫혀진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. 출입이 자유로운 출입구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 특히, 유모차나 기타 짐을 가지고 출입하는 모두에게 유익하다.

#### ■ 설치요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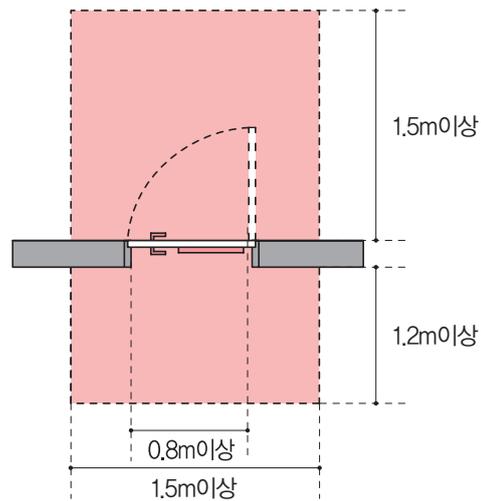
- 건물의 출입구(가능하면 주출입구)는 반드시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는 가능한 분리된 출입문으로 유도되어야 한다.
- 주출입구에는 건물과 건물 내 편의시설 (특히,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)의 안내 표시 또는 안내소가 있어야 한다.
-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, 비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·처리되어야 한다.

1) 유효폭 및 활동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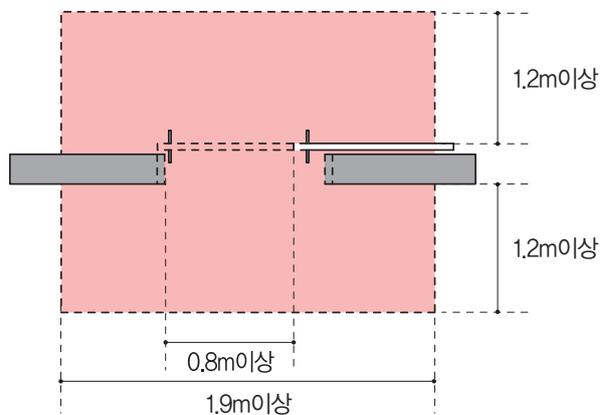
-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0.8m 이상이어야 한다.
- 유효폭 0.8m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므로 주출입구는 가능하면 0.9m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.
- 통행량이 많은 주출입구(문)의 통과 유효폭은 1.2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.



- 출입문 전후의 휠체어 회전공간(활동공간)은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.5m 이상, 반대 쪽은 1.2m 이상, 미닫이문은 좌우폭 1.9m 이상, 깊이 1.2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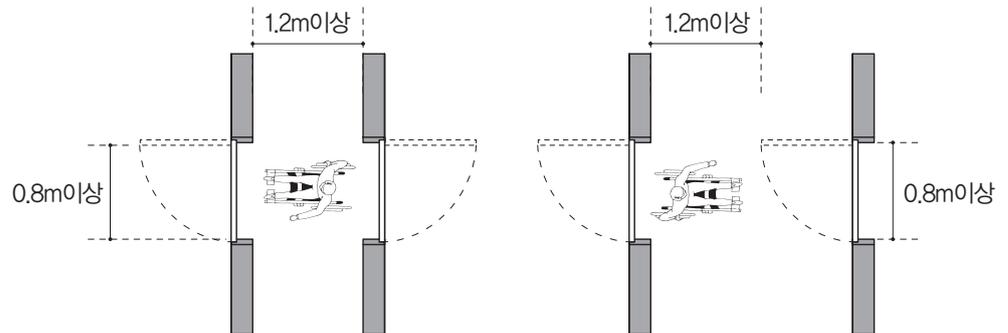


〈여닫이문의 활동공간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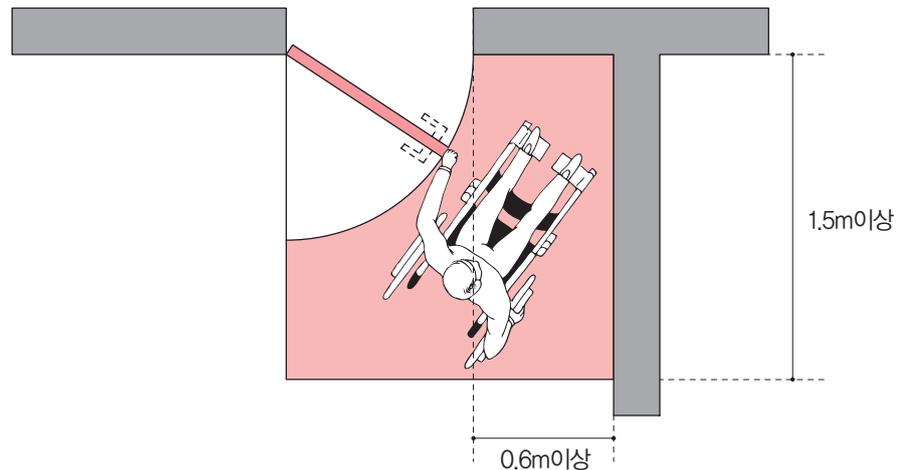
〈미닫이문의 활동공간〉

- 출입구(문)의 전면 유효거리는 1.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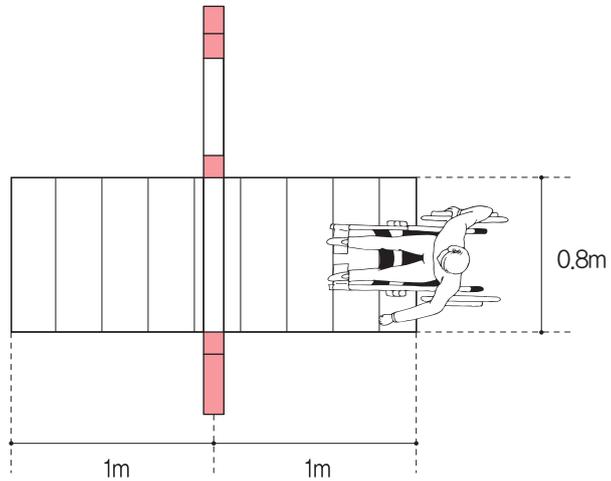


## 2) 문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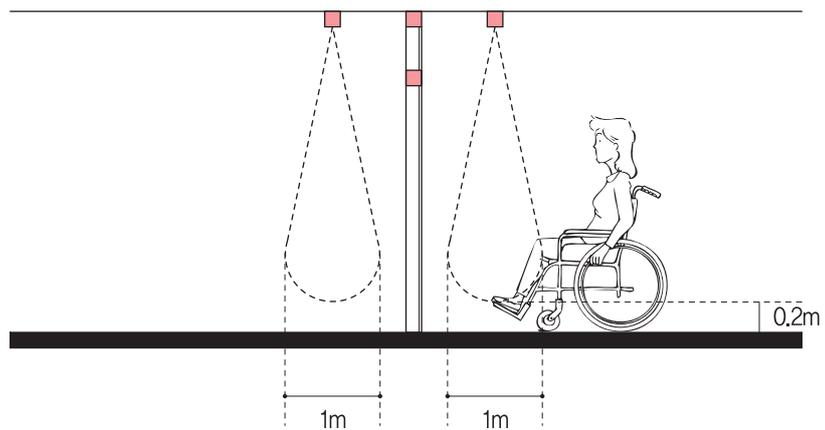
- 수동문의 경우에도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
- 자동문이 아닌 경우, 출입문 손잡이 쪽 옆에 최소 0.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.
-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직진할 수 없는 회전문과 양쪽 방향으로 열리는 자재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.
- 강화도어 등 유리문일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1.5m 높이에 폭 10cm 이상의 수평띠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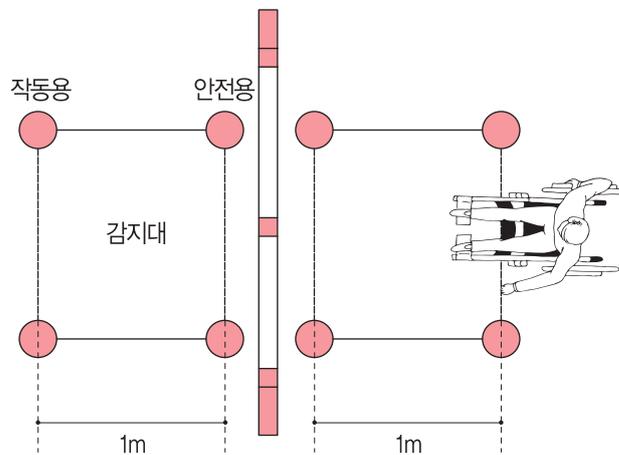
- 주출입문은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
〈바닥 감지 방식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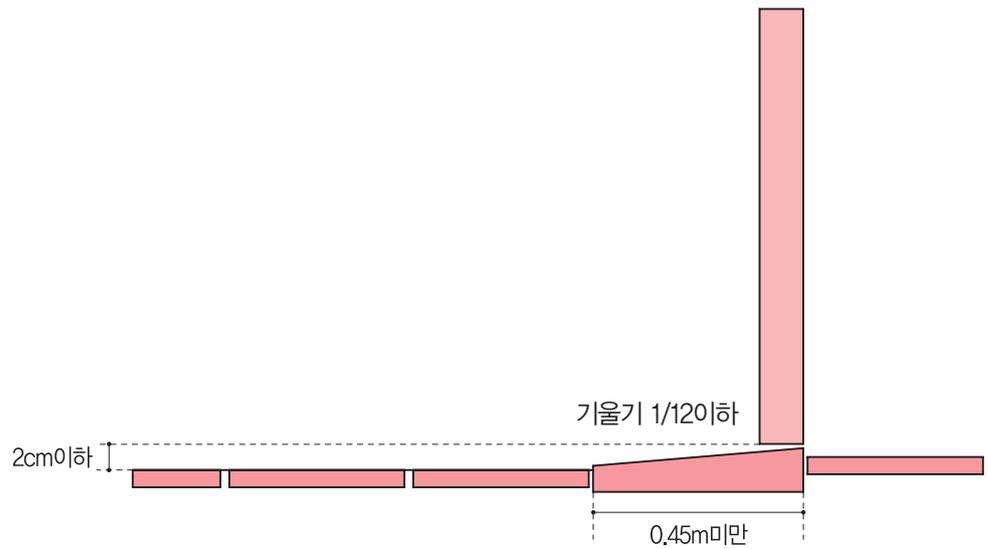
〈공간 감지 방식 (초음파 이용)〉



〈선 감지 방식 (광선 이용)〉

## 3) 턱 낮추기

- 주출입구에는 2cm를 초과하는 바닥의 높이 차이나 턱, 문지방 등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노인, 어린이, 임산부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.
- 단차가 있어 턱 낮추기를 할 경우에도 기울기 1/12 이하, 단차 2cm 이하여야 한다.



## 4) 음성안내 장치 등

- 시각장애인의 출입이 많은 주출입구(문)에는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청각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을 위하여 문자안내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.
- 시각 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음향유도장치와 음성유도장치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.